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34호 2023. 10. 2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7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2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5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2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23-130호 도로명주소 고시 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532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거창군 공고 제2023-1533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

거창군 공고 제2023-1547호 2023년도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 후보자
추천 공고 21

거창군 공고 제2023-1551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4

거창군 공고 제2023-1565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49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0월 25일

거창군 규칙 제137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p> <p>③ 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④ 경제복지국장은 <u>지방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p> <p>③ 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④ 경제복지국장은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74
----------	---------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책임국장제 시행 이후 능력 있는 인재가 직렬에 상관없이 부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을 확대하고, 재난업무 강화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장 직렬 확대 등 정원 조정함(안 제3조·별표 3)

1) 행정국장·경제복지국장

가) 현행: 서기관

나) 변경: 서기관·기술서기관

2) 본청 7급

가) 행정·공업 감1

나) 행정·방재안전 증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2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2.~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0월 25일

거창군 훈령 제472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3-75
----------	---------

제출연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책임국장제 시행 이후 능력 있는 인재가 직렬에 상관없이 부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을 확대하고, 재난업무 강화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함(안 별표)

1) 행정과·경제기업과

가) 서기관 감1

나) 서기관·기술서기관 증1

2) 문화관광과: 7급 행정·공업 감1

3) 안정총괄과: 7급 행정·방재안전 증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10. 25.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2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98 등 4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72-5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 1532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2. 개정이유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의 세부 기준을 현행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영인과 근로자가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

3. 주요내용

가.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에 대한 변경가능하거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7조)

- 1) 현행 :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
- 2) 변경 :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4. 예고기간 : 2023. 10. 19.(목) ~ 11. 7.(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 055) 940-3823 / FAX : 055) 940-334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기재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기재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기재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 과.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 더 기재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 마 기재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 나 기재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가. ~ 나 기재생략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03.29>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03.29.>(2014.5.28)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023년 제1회 거창군 규제혁신 TF회의」 결과를 반영해 출·퇴근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공단지 근로자 편의제공 및 기업체 보조금 지원 금액 증액

3. 주요내용

- 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금액 중 연간한도 증액(안 제8조)
- 현행 : 연간 30백만원 이내
 - 변경 : 연간 50백만원 이내

4. 예고기간 : 2023. 10. 19.(목) ~ 11. 7.(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 055) 940-3823 / FAX : 055) 940-334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연간 30백만원 이내”를 “연간 50백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기재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기재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기재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 더 기재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 마 기재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 나 기재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가. ~ 나 기재생략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산업·농공단지 내 고용증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9.10.8.)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 원 이내
2. 차량종류 :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 10년 이내(조신설 2019.10.8.)

2023년도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 후보자 추천 공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거 창 군 수

1. 수상후보자 자격 기준

- (공통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서 5년 이상 직접 참여하여 지역 경제 및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을 쌓은 자
- 군정 기여도와 사업 추진실적이 탁월하여 포상 시 여타 단체에 과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근로자의 주민등록이 거창군으로 전입되어 있는 기업

- (군수표창 세부기준)

【최고경영인 賞】

-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기업의 대표자로
-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 시설투자,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 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 수출증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최고근로인 賞】

-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 노사화합,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수상자 선발인원

- 「최고경영인 賞」 : 1명
- 「최고근로인 賞」 : 1명

※ 상공대상 1명, 최고근로인상 4명(군의장상 1, 협의회장상 3) 별도 선발

3. 수상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추천인】

- 「최고경영인 賞」 :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
- 「최고근로인 賞」 : 기업의 대표자

【구비서류】

-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공적 증거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8. ~ 11. 13. / 6일간
 - 방문시간 : 10시 ~ 17시(점심시간제외) * 우편접수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군청 또는 (사)거창군상공협의회
 - 거창군 경제기업과 ☎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사)거창군상공협의회 ☎ 5014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접수, 이메일(misogirl@korea.kr)

5. 수상자 결정 및 발표

- 수상자 결정은 거창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추천 기관·단체와 당사자에게 통지
 - 심사과정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자 발표 : 2023. 11월중(수상자 개별 통보)
- 시 상 : 2023. 12. 5.(화) 예정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거나, 거창군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551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역내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축 및 과학영농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실(토양/퇴.액비/농약)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분석실 설치 및 운영관리(안 제3조 ~ 4조)
-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7조)
- 시료의 보관 및 폐기(안 제8조)
- 분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0조)

②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분석의뢰 및 업무절차(안 제2조 ~ 3조)
- 분석결과 통지 등(안 제4조)
- 분석 수수료(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3.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라. 전화 055-940-8253, 팩스 055-940-81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토양 검정,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등)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분석의료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이외에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성적서를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 2에 따라 분석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①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공공급식, 3무농업, 거창푸드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석 항목(제2조 관련)

분석 항목명	분석 성분
1.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 토양화학성분분석(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2. 가축분뇨(퇴비·액비) 성분 분석	○ 퇴비성분분석(부숙도, 함수율) ○ 액비성분분석(부숙도, 함수율, 질소, 인산, 칼리)
3. 농업용수 분석	○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4.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 농산물(식물체)만 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다성분동시분석법 성분(463성분)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분 석 성 분	분석기준	수수료(원)	비고
(1)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 토양화학성분분석(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	무료	관내농업인 대상
(2)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 ○ 퇴비성분분석(부숙도, 함수율) ○ 액비성분분석(부숙도, 함수율, 질소, 인산, 칼리)	-	무료	관내농업인 대상
(3) 농업용수 분석 ○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	무료	관내농업인 대상
(4)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다성분동시분석법 성분(463성분) - 관내농업인 - 연간활용 관내농업인 - 타시군 기관·농가	1점 1년 1점	10,000 60,000 348,000	작물당 부과 연간활용 작물당 부과
※ 【잔류농약성분 별도기준】 - 고령농 만 70세 이상 - 여성농업인(만 65세 이상) - 거창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일 경우	1점 (연간활용)	5,000 (30,000)	관내농업인 (1/2) 감면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의뢰 등) ①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중앙·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분석 의뢰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분석 시료(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농산물 등)는 거창군 관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⑦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3조(분석 업무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분석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 할 수 있다.

③ 결과는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5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석의뢰 절차(제3조 관련)

의뢰인	처리기관	처리기한 14일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농업기술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접수 : 해당부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접수 : 수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분석실시 : 해당부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분석 실제 소요기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분석결과서 작성 : 해당부서</div>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분석결과서 교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결과통지 : 해당부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분석완료 즉시</div>

[별지 제1호 서식]

20〇〇년 토양검정 분석의뢰 시료 접수 대장(제 2조 관련)

접수일자	토지현황	지 적	작 물 명	년 수	의뢰접수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지 목	검사내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명	통보방법
	지 번								5항목	4항목		

- * 지목 : 논, 밭, 과수, 임야, 시설
- * 검사내용 : 성분검사, 유기농, 무농약, GAP
- * 통보방법 : 우편, 모바일, 직접방문

[별지 제2호 서식]

20○○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 의뢰서(제 2조 관련)

퇴·액비 분석 의뢰서		
의 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주소 : e-mail :
	연락처	휴대전화 : 사무실 :
	면적(m ²)	
의 뢰 내 용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발효액
	축종	<input type="checkbox"/> 돼지 <input type="checkbox"/> 소·젖소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검사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	
	검사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숙도 <input type="checkbox"/> 함수율 <input type="checkbox"/> 구리 <input type="checkbox"/> 아연 <input type="checkbox"/> 염분
목적(용도)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별지 제3호 서식]

2000년 농업용수 분석의뢰 시료 접수 대장(제 2조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의뢰인			재배 작목	분석 사유	구 분 채취장소(지번)	pH	EC (ds/m)
		성명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	
								6.0~8.5	1.0 이하

* 분석사유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 GAP인증, 양액재배, 기타

[별지 제4호 서식]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	-----	-----	-------------

□ 생산자(신청인)

단체명			법인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영농 시작년도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E-mail	@

○ 신청인 * 생산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작성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E-mail

□ 신청내역 * 시료가 2건 이상 시 붙임 1에 추가 기재

신청사항	시료명	신청일	
신청내역 (붙임1 □) 시료번호	건수	채취일자	채취장소
	건		분석항목
	(불임1 □)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검사목적)	의뢰용도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과알림 방식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 신청한 작목(시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는 위에 기재한 검사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석 결과는 참고용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은 시료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따른 463종 외 다른 성분에 대한 분석은 불가합니다.

신청인: (서명)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안전성 분석 결과통보 및 결과서에 개인정보 기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분석결과 통보, 통보서 개인정보 기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분석의뢰서 결과통보 요청기관,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ASTIS)시스템 정보 구축(농진청)	분석결과 통보서 개인정보 확인 및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인 서비스 제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시료내역, 분석결과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납부내역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상 <input type="checkbox"/> 현금납부 <input type="checkbox"/> 카드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기납부(연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작물당 부과 <input type="checkbox"/> 연간활용(1년)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납부현황	검사수수료 (원)				납부일	비고
	건수	시료명	검사용도	합계(원)		

<붙임1> 신청 시료 목록

□ 신청시료 목록 (2건 이상 시, 2번 시료부터 작성)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 고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 고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 고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 고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제4조 관련)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 영지 현황

조사번호	작물명	면적	
경작자명	경작지		
경작지주소			
토양유형	토성	토양층	배수등급
토양특성			

□ 토양검정 결과



단위	pH	g/kg	mg/kg	cmol+/kg	cmol+/kg	cmol+/kg	dS/m
검정범위							

□ 비료 추천량 (kg / m²) 비료와 특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구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특비 종류				소석회 (선택고도)	
	요소	유안	용성인비	용파인	염화칼리	황산칼리	우분특비	돈분특비	계분특비	혼합특비		
단거리												
중거리												

□ 담당자 의견
▶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연생략)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연생략)

분양인명: _____

발급일자: _____

담당자: _____

전화: _____

[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결과서 (제4조관련)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 <퇴비>				
위탁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배출시설규모		비료관리법해당여부	
위탁내용	시료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발효액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스·결스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축종			
	시료번호			
	접수일자			
	검사일자			
분석결과	용도			
	비고			
분석결과	항목(단위)	성적	적합여부	기준
	부숙도(腐熟度)			표준 1800 이하: 부숙함 표준 1800 이상: 부숙불함
	함수율(%)			0 - 70%
	구리(mg/kg)			0 - 500mg/kg
	이연(mg/kg)			0 - 1200mg/kg
	염분(%)			해당사항없음
	질소(%)			해당사항없음
	인산(%)			해당사항없음
칼리(%)			해당사항없음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제위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생략)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생략)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 <액비>				
위탁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배출시설규모		비료관리법해당여부	
위탁내용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뇨발효액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스·결스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축종			
	시료번호			
	접수일자			
	검사일자			
분석결과	용도			
	비고			
분석결과	항목(단위)	성적	적합여부	기준
	부숙도(腐熟度)			표준외부
	함수율(%)			95 - 100%
	구리(mg/kg)			0 - 70mg/kg
	이연(mg/kg)			0 - 170mg/kg
	염분(%)			0.1~0.2%
	질소(%)			해당사항없음
	인산(%)		-	해당사항없음
칼리(%)			해당사항없음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제위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생략)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생략)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신청인

단체명				법인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성별		영농 시작년도	
주소	거주지				
	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E-mail

의뢰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내역

신청일				
신청내역	작목	채취일자	채취장소	검사단계
검사용도		<input type="checkbox"/> 거창군부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석결과

잔류농약

분석내역	분석일자	분석방법		<small>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따른 463성분 분석</small>	
	검출성분명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적부판정	비고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위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농업용수)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시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분석 결과는 참고용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산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 중 략-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3.] [총리령 제1508호, 2018. 12. 13., 일부개정]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홍보·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4호, 2018. 12. 31.]
- 제5조(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조사·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 ②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전문

□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전문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거창군수(직인생략)

1. 모집인원 : 21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수의 3배수)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의해 최종 7명 위촉

2. 모집분야 : 환경관련분야(대기 및 폐기물 등) 전문가

3. 평가위원 자격요건

가.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모집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당해 평가대상과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나.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범위 : 소각시설(30톤/일) 및 기타 부대시설 위탁관리

라. 위탁의 주요내용

- 반입되는 반입 폐기물의 계량과 성상분석 및 처리
- 소각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부대시설의 관리
- 고압증기의 생산·관리 및 터빈발전애 따른 수전·매전량 관리
- 침출수 오·폐수 처리
- 소각 잔재물(바닥재, 비산재)의 배출·운송·처리
- 소각시설 부지내 조경 및 부대시설 관리
- 소각시설의 운전상태 분석 및 계절변동에 따른 운전방법 정착
-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배출가스의 자가 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및 개선대책, 주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1. 10.(09:00 ~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나. 접수처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다.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등기우편, 이메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심소정길 139-14(환경과 매립장사무실)

- E-mail : thanku2@korea.kr

- 문의 : 055-940-3948

※ 우편 접수 시 등기로 발송 요청 드리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평가 위원(후보자)으로 인정됨

※ 이메일 송부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우편,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전화(055-940-3948)로 수신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재직증명서(교수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7. 평가위원 선정

가. 평가위원 추첨일 : 2023. 11. 20.(월)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

다.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통해 21명의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 입찰 등록 제안업체별 11번(예비후보 4명 포함) 추첨
- 다빈도순으로 7명 선정(빈도수가 같을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예비위원 4명 선정

라. 선정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일 이전, 선정된 위원분께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분께는 별도로 통보 드리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8.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가. 개최일시 : 2023. 12. 01.(금) 14:00(예정)

나. 개최장소 : 거창군청 중회의실(예정)

※ 최종 선정된 위원에서 일시, 장소, 평가방법 등 개별 통보

※ 평가 당일 일정을 고려하여 응모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948)로 문의 바랍니다.

라. 보내주신 자료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마.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거창군의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경력 등에 대한 증명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3. . .

작성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붙임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서평가위원 위촉부터 제안서평가 종료시까지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동의 거부 시 평가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본인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서 작성요령

1. 인적사항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전문분야 작성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표】

직 무 분 야	전 문 분 야
환 경	- 대기, 폐기물

※ 상기 전문분야로 분류되지 않은 분야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되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경력사항은 전문분야와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경력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공공사업과 **관련한** 주요저서 및 논문저술 실적 등 **해당되시는 분에 한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출된 자료는 거창군에서 시행할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의 기술제안서 평가에만 활용하겠습니다.